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강북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 「도서관법」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향유 기회 보장 및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이 규정된 바, 이를 「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.
- 이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지원(안 제4조의2)과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 신설 내용(안 제28조제3호) 및 기타 관련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